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 번호	32
----------	----

제출년월일 2018. 9. .
제 출 자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올림픽 전통누정(청송정)을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연장소, 올림픽 기념행사, 전통문화 행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4조에 의거, 기부채납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27-3외 2필지
- 내 용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1,013㎡
- 사용기간 : 2018. 10. 1 ~ 2023. 9. 30(5년)
- 대상재산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	대장가액(원)	기부채납	활용계획
대관령면 용산리 227-3	천	211	10,739,900	2009.6.25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연장소 올림픽기념행사 전통문화행사
대관령면 용산리 226-78	천	14	712,600	2009.6.25	
대관령면 용산리 226-79	천	788	18,202,800	2009.6.25	
계		1,013	29,655,300		

□ 지적도 및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3. 생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